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공연장 추가〉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6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계원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2. 19.
3. 회 부 일 : 2025.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산업단지,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인원이 다수인 공연장은 영화상영관과 달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 추가

개정안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관리 대상에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u>9의2.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u>
10. ~ 14. (생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¹⁾”이라 함)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2024년 말 현재 공항·철도·항만 시설 등 총 6,336개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지정·관리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제40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개요는 [참고1] 참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관리 현황>

(2024.12.31. 현재)

총계	공항 시설	철도 시설	도시 철도 시설	항만 시설	지정 문화재 시설	산업 기술 단지	산업 단지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	영화 상영관 (수용 인원 1000명 이상)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 축 시설	천연 가스 인수 기지 및 공급망	전통 시장 (점포가 500개 이상)	발전소	물류 창고 (연면적 10만㎡ 이상)	가스 공급 시설
6,336	16	366	741	100	2,468	22	230	384	222	1,191	20	123	51	211	67	124

(자료: 소방청)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특정소방대상물²⁾의 경우와 달리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각각 수립·시행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며(제40조제2항 및 제3항), 한국소방안전원 등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제41조)³⁾,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등 공적 관리가 강화됨⁴⁾.

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024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약 230만개 소가 지정되어 있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상세 내용은 [참고 2] 참조

4) 현행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됨.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비교>

(2024. 12. 31. 현재)

구 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제1항
종류	시행령 [별표2]에 규정	법률 제40조제1항 각호에 규정
관리감독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 소방본부, 소방서장
안전계획	화재예방 안전관리 기본계획	화재예방 안전관리 기본계획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관리형태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관리	관계인 + 공적관리 강화
소방시설점검	관계인의 자체 점검	관계인의 자체 점검,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안전조사 주체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화재안전조사 방법	소방 단독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합동
대상수량	2,660,447	6,336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⁵⁾.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⁶⁾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

5) 개정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6)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고7),

이 중 2025년 2월 현재 전체 공연장 1,347개소 중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은 86개소로 나타남(전체 공연장의 6.4%).

<국내 공연장 현황>

(25.2.21.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계	국공립	민간
전체 공연장	1,347	680	667
1천석 이상 공연장	86	71	1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은 사고 시 많은 인원이 일순간에 출입구에 몰리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대피시간이 지연되어 대형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고,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특정소방대상물 예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 근린생활시설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연장 내부는 가연성 물질과 개방된 공간을 가지고 있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데 비해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공연장의 대피로나 소화설비 등 건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피 및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많은 공연장이 무창층으로 되고 있고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고 있어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음⁸⁾.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 등 공연 또는 행사 장소에서 각종 안전 사고가 발생⁹⁾하고 있어 공연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¹⁰⁾,

8) 김인태, 공연장 화재사례 및 분석, 방재와 보험, 2008. 3-4월호, 54면.

9) 최주성·김정진 기자, ‘성수동 음악 공연 인파 몰려 취소...폐기구 “기대했는데 속상”’, 연합뉴스, 2024.7.28.,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8008051004?input=1195m>
이혜원 기자, ‘700여 명 몰린 성수 프라다 행사...인파 사고 우려로 조기 종료’, 동아일보, 2024.10.25.,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25/130294032/2>

10) 2025년 2월 1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불이 진화되었고, 구조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음.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조계원 의원, 공연장 화재 막는 ‘화재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 2. 20)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2377>

[참고] 최근 공연장 화재(예시) (자료: 소방청)

- ①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화재 사례
 - (일시) 2007. 12. 12.(수) 19:30
 - (장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 ※ (건물구조) 음악당 등 총 7개동, 연면적 합계 120,905㎡, 철콘조구조 6/1
 - (발화장소) 무대부
 - (사고원인) 부주의
 - ※ 배우가 추위를 달래기 위해 성냥으로 원고에 불을 붙여 벽난로에 집어넣는 장면을 연출하던 중 불씨가 무대 뒤편에 무대막에 옮겨 붙으면서 연소확대
 - (인명피해) 없음(20여명 연기흡입)
 - (재산피해) 4억 9천만원
- ② 미국 스테이션 나이트클럽 화재 사례
 - (일시) 2003. 2. 20.(목) 23:08
 - (장소) 미국 Rhode Island주의 West Warwick
 - (발화장소) 무대 좌우측 상부의 벽
 - (사고원인) 불꽃발생 장치
 - ※ 실내 공연장에서 공연 중 공연용 불꽃 발사하여 화재 발생
 - (인명피해) 사망 100명, 부상 230명

특히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수용된 공연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폐쇄 구조를 가진 공연장의 특성 상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관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최근 5년간 공연장 화재 발생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 원)
		사망(명)	부상(명)	
계	64	1	2	1,061,472
2020	12	0	0	101,633
2021	14	0	0	647,941
2022	18	0	2	30,291
2023	12	1	0	228,101
2024	8	0	0	53,506

※ 2024년도의 화재 통계 수치(2024.10.31. 이후)는 화재 조사 일정에 따라 소폭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소방청)

다만,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공연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행 법령의 내용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공연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11)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의

※ 인명피해 확산 원인 : 방염처리가 안내 내장재, 목조건물, 자동식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미설치, 공연장 내부 수용인원 초과하였고 출입구에 대피인원이 급격히 몰려 질식사
- (재산피해) 건물전소

11)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

운영자는 공연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와 해당 장소의 운영자도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¹²⁾에는 공연장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공연법」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및 관리 조직,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 관련 사항,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 운영자 또는 공연 개최자로부터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받으면,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러한 규정은 공연이 개최될 때 관할 소방서가 공연의 개최 규모

-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 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및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공연 현장에서의 대응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포함 사항¹³⁾>

구 분	공연장(객석 수)		공연장 외 공연 (1천명 이상 관람객)
	500석 미만	500석 이상	
공연장 시설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	○	○	○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	○	○
안전관리비 계상 (공연법 제11조의2)	×	○	○
안전관리조직 구성 (공연법 제11조의3)	×	○	○
안전교육 관련 사항 (공연법 제11조의4)*	△*	○	○
피난안내 (공연법 제11조의5)	○	○	○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	×	○
공연계획서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3) 화재 등에 대비한 1,000석 이상 공연장의 보호조치 관련 현행 규정 상세 내용은 [참고 3] 참조

<화재예방 관련 현행법 및 「공연법」 내용 비교>

구 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연법
안전계획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안전관리 포함
계획수립	소방계획서	재해대처계획
	작성기준일 없음	매년 12. 31.까지 작성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1명 이상
대응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안전교육	소방안전관리자(2년 마다 8시간) 자위소방대원(연 1회 이상) 근무자, 거주자(연 1회 이상)	안전총괄책임자(2년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2년 8시간 이상) 공연자(공연 전 1시간 이상)
피난계획	피난계획 수립 시행 피난안내도 부착 등 피난안내	피난계획 없음 피난안내도 부착 등 피난안내
안전관리비	없음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 계상
안전관리	화재예방안전진단(5년)	없음
시설점검	전문업체 작동점검(년 1회 이상) 전문업체 종합점검(년 1회 이상)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필요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정기검사 3년 안전진단 전문기관 정밀진단 9년
방염	공연장 방염대상 (소방시설법)	방화막 설치

(자료: 소방청)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공항, 철도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대상은 해당 법률에서 해당 시설의 화재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미흡한 반면에, 「공연법」은 공연자 및 작업자 등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적을 두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재해대처계획 수립, 안전교육, 피난안내 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⁴⁾.

문 의 처
02)6788-5351

14) 참고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은 이 법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이 법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이중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

참고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개요

자료: 소방청

□ 개 념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 현 황

- 법 제40조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항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총계	공항 시설	철도 시설	도시 철도 시설	항만 시설	지정 문화재 시설	산업 기술 단지	산업 단지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	영화 상영관 (수용 인원 1000명 이상)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 비축 시설	천연 가스 인수 기지 및 공급망	전통 시장 (점포가 500개 이상)	발전소	물류 창고 (연면적 10만㎡ 이상)	가스 공급 시설
5,972	16	319	731	101	2,270	20	200	400	230	1,131	29	113	48	171	50	143

□ 안전관리

- (소방청)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5년 주기)

◇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매년)

◇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2

화재예방안전진단 개요

□ 개요

-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 (정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 개선대책 마련(정량 + 정성)
 -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

□ 일반현황

- (진단기관) 한국소방안전원('22.12.1.) 또는 청장이 지정한 기관*
 - * (사)한국안전인증원('24.6.10.), (재)한국시설물화재안전진단원('24.9.6.)
- (진단대상)

계	공항 시설	철도 시설	도시 철도시설	항만 시설	공동구	천연가스 인수기지 등	발전소	가스공급 시설
881	15	162	546	21	31	5	94	7

- (진단시기) 최초, 정기 진단 및 경과조치
 - (최초) 사용승인·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 (정기) 진단 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진단

구분	우수(A) (90.00~100)	양호(B) (80.00~89.99)	보통(C) (70.00~79.99)	미흡(D) (60.00~69.99)	불량(E) (59.99이하)
주기	6년	5년		4년	

- (경과조치) 기존 대상물은 유예기간 내에 안전진단 실시

대상	공항*, 공동구	철도, 항만	도시철도	발전소, 가스·가스공급
기한	'23. 12. 31.	'24. 12. 31.	'25. 12. 31.	'26. 12. 31.
대상	46(공항 15)	183	546	106

* (공항시설)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공항시설

- (결과보고) 진단결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60일 이내)

※ 화재예방 안전진단 대상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연번	시설	각 시설 별 대상
①	공항시설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 공항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②	철도시설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 철도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③	도시철도시설	역사 및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④	항만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 항만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⑤	공동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⑥	천연가스 인수기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⑦	발전소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발전소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⑧	가스공급 시설	가연성 탱크 용량 합계 100톤 이상 또는 저장용량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참고 3

화재 등에 대비한 1,000석 이상 공연장의 보호조치 관련 현행 규정

■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6. 5. 17.>

안전교육의 내용(제9조의4제3항 관련)

대상자	교육내용
1. 공연자	가.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나.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마.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 총괄 책임자	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나.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다.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마.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리 담당자	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라.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바.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제6조의4 관련)

1. 피난안내도의 비치

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공연장(법 제11조의5제2항 및 영 제9조의5에 따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피난안내도의 위치: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3)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 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4)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5)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라.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등

- 1) 크기: B4(257mm×364mm)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mm×420mm)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
- 2) 재질: 종이(코팅처리 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마.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바.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2. 피난의 안내

가. 피난안내 대상: 공연장

나. 피난안내의 방법 및 시기

- 1) 방법: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 2) 시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해야 한다.

다.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 · 피난통로 · 비상구 등의 위치
-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3)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4) 장애인 · 노인 · 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5)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라.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해야 한다.